

※ 본 자료는 19년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서 개발” 연구결과물의 요약본으로,
관련 연구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2019. 12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목 차

1. 가이드라인 목적 및 활용	1
2. 데이터 거래/계약 시 법적 기초지식	6
3. 데이터 거래/계약 시 핵심 요소	10
4. 데이터 거래/계약 시 검토 쟁점	11
5. 데이터 거래/계약 시 대가 및 이익 설정 사례	12
[붙임1]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14
[붙임2]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內 계약시 고려사항	19
<부록> 표준계약서	21
①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22
②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30
③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39

1

가이드라인 목적 및 활용

【데이터 거래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과 ICT 발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의 활용이 촉진되고 데이터 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하며, 특히 업종을 초월한 복수의 데이터 조합은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큰 가치는 없고, 원시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의 가공·융합·분석 등을 통해, 이를 사업 활동에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최근 데이터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계약은 보편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그간의 계약 실무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써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시장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함

【가이드라인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표준적인 모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거래 계약에 대하여 몇 가지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계약 쟁점 및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
-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조항 작성 시 고려 요소 등을 설명함으로써,

- 거래 현실을 반영한 **안전한 데이터 거래** 도모와 **거래비용 절감** 및 **분쟁 해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 데이터 거래 이해당사자(제공자, 수요자, 플랫폼 운영자 등)간 계약 시 고려할 주요 법적 사항들을 안내하고 표준계약서를 함께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가이드라인 예상 구독자】

- 본 가이드라인의 예상 구독자는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민간·공공 계약 담당자, 기업 경영자, 데이터 유통·활용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자, 데이터 관리자, 오픈마켓 및 플랫폼 운영자 등)으로 폭넓게 상정함
- 오늘날 데이터 계약이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종사자 외에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자 등이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 외에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플랫폼) 운영자 등 계약 관련 모든 사람이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음

【계약의 복잡화·고도화】

- 데이터 계약이라는 새로운 유형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내용이 한층 복잡화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당사자가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하여 저비용으로 **합리적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관계된 법 등의 적용과 맞물려 계약 당사자로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비추어, 계약 내용과 계약 방식 등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계약으로 정할 사항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님**
- 데이터는 무체물이며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고, 데이터의 이용 권한은 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함
- 당사자들은 데이터의 창출 및 활용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용 조건과 이용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래 실상에 따라 계약을 고도화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데이터 계약의 교섭 방식에 대하여 **명시적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거래 계약을 위한 협상과 교섭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하게 됨

-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계약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제시함
- 계약 협상·교섭을 위해서는 계약 대상과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만일 데이터 거래 계약 당사자가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유무, 종류, 가치 등 계약 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거래상 지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경쟁회사인지 여부, 현재 또는 장래의 크로스라이선스 가능성, 상호보완 관계,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 이익을 서로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계약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상팀 구성 및 협상 카드를 복수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래를 위한 협상은 협상자 선정, 비밀유지 계약 체결, 사전협상, 협상진행, 협상조건 합의, 조건변경 재협상, 계약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함
-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데이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 계약의 교섭·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함

【지식재산권 의한 보호】

- 데이터는 무체물이고,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음

- 데이터 보호는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으나, 모든 데이터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저작권법은 구조화된 데이터, 즉, 정형데이터로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적합한 구조로 된 데이터(고객데이터, 매출데이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음
 - ※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19호). 상당한 자본과 인적·기술적 투입을 한 제작자에게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저작권법 제93조 1항)
- 그러나 저작권법은 센서나 카메라 등 기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창출되는 데이터나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사용 이력 등 데이터 집합에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이며, 데이터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임
- 한편, 제조업의 생산 방법에 관한 노하우·센서 메이커의 데이터 클렌징 노하우, 서비스 개발 업체에서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노하우, 데이터 창출이나 데이터의 유통·활용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하우 등이 집약된 데이터가 ①비밀관리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데이터가 일정한 유통 거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영업비밀로서 반드시 보호되는 것은 아님

▶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이해 당사자들이 先 숙지해야 할
주요 법적 기초지식

① 데이터 소유권(ownership)

- 데이터 계약의 논의에 즈음하여,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말이 이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법적 정의가 없으며 “데이터에 대한 (민법상의) 소유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
-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등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따른 데이터 이용권한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채권적 지위를 가리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호칭함
- 데이터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데이터에 소유권 기타 물권적인 권리는 성립할 수 없음
- 계약 실무상 어떤 데이터에 대해, 한쪽의 계약 당사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귀속시킨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 소유권 등 물권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표현은 해당 계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당사자가 데이터 창출에 가한 기여도나 데이터와 당사자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산업분야나 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
 - 현재 어느 쪽의 당사자가 데이터에 대한 채권적 지위(데이터 소유권)를 가져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찾는 것은 곤란함
- 데이터 창출에 대한 기여도나 장비 소유권 등은 데이터 이용권한의 고려 요소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이용권한마다 데이터 이용 촉진 또는 비밀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 각 고려요소를 평가하고 데이터의 이용권한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데이터 분류

-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①구조화된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에 적합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의미함(예, 고객데이터, 매출데이터) ②비정형 데이터는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포함함(예 전화·라디오방송 등 음성(오디오) 데이터, TV 방송 등의 영상 데이터, 블로그나 SNS 등의 소셜 미디어에 기록된 문자 데이터 등)
-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 개인 데이터라는 말은 현행법상 정의는 아니지만, “개인 속성정보, 이동·행동·구매 기록, 착용 장비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된 정보, 상품 정보 등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함
 - 따라서 개인 데이터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와의 경계가 애매하고, 개인과 관계성이 발견되는 광범위한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개인 데이터 속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③ 데이터의 유출이나 부정이용을 방지하는 각종 수단

- 제공 데이터에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외부에 유출되고, 부정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그러한 우려에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해 주저하는 사업자도 있음
- 이에 데이터 유출이나 부정이용(악용)을 방지하는 각종 수단으로 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 등을 방지하는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각종 수단을 숙지하여 적절히 필요한 수단이나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악용을 방지토록 함

③-1 계약에 의한 보호

- 먼저 제공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수신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 제공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수령자의 임원 및 직원을 제한하고,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데이터 수령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지우는 방법이 있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금액이 작으면 계약의 구속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입각한 적절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③-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로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①비밀관리성, ②유용성, ③비공지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공 데이터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③-3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

- 타인이 일정한 투자와 노력을 한 가치있는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방·복제하는 데드 카피(dead copy) 행위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③-4 오용 등을 방지하는 기술

- 제공 데이터의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공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한, 워터 마크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출처 등을 명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또한, 데이터 수령자의 바로 옆에서 제공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데이터 공급자의 공장 내에 데이터 수령자의 분석 시스템이 들어간 서버를 설치하고 해당 서버에서 실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공급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3

데이터 거래/계약 시 핵심 요소

▶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이해 당사자들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 ① 당사자 간에 설정해야 이용 조건
- ② 대상 데이터의 범위·품질
- ③ 이용 목적의 설정
- ④ 분석·가공 및 파생 데이터의 이용 권한
- ⑤ 제3자에게의 이용 허락 등의 제한
- ⑥ 데이터 내용 및 지속적 창출의 보증/비 보증
- ⑦ 수익 분배
- ⑧ 비용·손실 부담
- ⑨ 관리 방법, 보안
- ⑩ 이용 기간 지역
- ⑪ 계약 종료 시 취급
- ⑫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재판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법원
- ⑬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창출한 데이터 거래 계약(데이터 창출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유의점
- ⑭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4 데이터 거래/계약 시 검토 쟁점

▶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 소지가 있거나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데이터 거래의 목적·범위
대상 데이터 등의 정의	- 제공·취득하는 대상 데이터(항목, 입도, 양, 파일형식 등), 가공 등 파생데이터
대상 데이터의 취득·수집방법 등	- 대상 데이터 취득·수집의 주체·방법·체계, 공유수단·방법
대상 데이터의 이용 권한	- 대상 데이터별 이용 권한(이용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배분, 액세스 방법 등, 대상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
파생 데이터의 이용 권한	- 파생데이터의 이용 권한의 배분,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3자 제공 여부	- 제3자 제공의 금지 또는 제공 가능한 방법·범위(그룹 회사 등에의 제공 가부)
대가·이익분배	- 대상 데이터 등의 제공·이용의 대가, 제3자 제공으로 생기는 이익분배, 매출금액 등의 보고, 장부의 작성·보존·열람 등
대상 데이터의 보증/비보증	- 정확성·완전성·안전성·유효성, 제3자의 권리의 비침해, 약의·중과실의 경우의 취급, 대상 데이터의 취득·이용 권한의 적법성
대상 데이터 등의 관리	- 구분관리, 선관주의의무, 제3자에의 비공개의무, 영업비밀로서의 관리, 관리상황의 보고·시정요구
개인정보의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의 이행, 안전관리조치
대상 데이터 등의 누설 시 대응·책임	- 상대방에의 통지, 원인조사·재발방지책, 금지청구, 위약금
비밀유지의무	- 비밀정보의 정의(비밀정보로부터 제외된 정보), 예외적인 개시 사유
손해배상·면책	- 제3자와의 분쟁의 대응, 불가항력 면책
유효기간·해제	- 당초의 유효기간, 갱신의 조건, 해제 사유·잔존조항
계약종료시의 대상 데이터 등의 취급	- 파기·삭제의 요부, 증명서의 요부
일반조항	- 비용부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준거법·분쟁해결(재판관할), 성실헬의

▶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적절한 대가 및 이익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고방식 사례

- 데이터 계약의 적절한 대가 설정(대가·이익의 분배 방식)은 사례에 따라 정하게 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유통 및 활용 가치를 찾았는지 여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고 내는지도 계약 자유 원칙의 범주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당사자 간의 대가·이익의 분배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예를 실무 참고용으로 제시함에 그침
- 일반론으로서 데이터 계약의 대가·이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로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이용 범위(지리적 제한 포함),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가치,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창출된 지식 재산권 등의 권리 관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분담, 라이선스나 로열티의 설정, 데이터 창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이 있음
-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계약의 협상이나 최종 합의가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데이터 계약에서 적절한 대가 또는 이익의 분배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 시험적 검증”과 “이니셜 로열티 + 러닝 로열티”를 예시함
-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 편의점을 예로 들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 진열 방법의 변경을 일정 지역의 일부 매장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함. 그 방법에 의한 **매출 증가를 확인**하여 그 검증에 따라 매출의 증가를 검증하고, 그 검증에 기하여 매출의 증가에 상응하는 대가로 데이터를 제공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열 방법을 전 점포에 도입함
- 이러한 방법은 위험과 효과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할 수 있음.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매출 상승 등)를 파악하고, 그 **효과에 따라 제공 데이터의 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 이것은 지식재산권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계약 체결 시에 **이니셜 로열티**(일정 금액)를 지급하고 그 데이터 이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러닝 로열티(계약기간 동안 지급되는 이익 등에 따른 금액)로 지급하는 방법임. 이 방법도 위험 및 효과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어떤 데이터는 매일 발생하며 **매일 업데이트 해 나가야만 데이터 가치를 가질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조건으로 러닝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 개 요

- 국내 실정에 맞는 ①데이터 제공형, ②데이터 창출형, ③데이터 오픈마켓형 등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

<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비교 >

구분	제 공 형	창 출 형	오 픈 마 켓 형	
			운 영 자 -제 공 자 형	운 영 자 -이 용 자 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소비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제공자, 소비자
데이터 보유자	공급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	공급자
주요 법적 쟁점	- 데이터 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금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제공자·소비자권리의무 -이용신청 및 방법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청약철회 -이용료·대금정산 -서비스 장애 등

□ 주요 내용

① 데이터 제공형

- (개념) 일반 당사자(데이터 제공자)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 기타 제공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24개 조항)

▲ (적용 사례) 제조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요구받은 치수의 정밀도나 강도를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스스로 다양한 시험을 하여 데이터를 획득함.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제품 개발의 공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본 표준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 계약 규정
 - 데이터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데이터를 가공·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생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본 표준 계약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독점적인 이용허락을 하고, 파생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용자가 권리를 보유하나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제공형 조항(안) >

(제1조) 목적	(제9조) 제공데이터 관리의무	(제17조) 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이용현황 보고 등	(제18조) 비용
(제3조) 제공데이터의 제공방법	(제11조) 제공데이터의 유출시 조치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제공데이터의 이용허락	(제12조) 손해배상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파생데이터	(제13조) 책임의 제한 등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대금지급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제공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5조) 계약기간	(제23조) 준거법
(제8조) 가명정보, 민감정보의 처리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관할법원 등

② 데이터 창출형

-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창출한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판매 시,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간의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 분배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23개 조항)

▲ (적용 사례) 공작기계 제조업체 A사는 고객들의 공장에 납품한 공작기계엔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로부터 획득한 공작기계의 운영데이터를 분석함. 운영데이터는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공작기계의 이용에 관한 조언과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할 때 활용함. 또한 A사는 고객의 각 공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용 방법을 최적으로 예견하여 고객에게 제공. 나아가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공작기계 제품 개선에도 활용하고, 향후 가동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제3자에게 판매함

- **(주요 내용)**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음
- 데이터 창출형의 경우에는 어느 쪽 당사자에게 포괄적인 이용권한이나 데이터 오너십을 귀속시킨다는 형식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각 데이터에 관해서 이용권한을 배분한 뒤, 만약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쪽 당사자에게 귀속시킨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파생데이터에 관해서는 교섭이 난항을 겪을 사태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것은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한 뒤 해당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는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창출형 조항(안) >

(제1조) 목적	(제8조) 대가·이익분배	(제16조) 계약기간
(제2조) 정의	(제9조)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보증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조) 대상데이터의 취득·수집 방법 등	(제10조)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제18조) 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4조) 대상데이터의 이용권한	(제11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19조) 비용
(제5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제12조)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시 대응 및 책임	(제20조) 양도금지
(제6조)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제21조) 준거법
(제7조) 제3자에 제공 등	(제14조) 손해배상	(제22조) 관할법원 등
	(제15조) 면책	(제23조) 성신헌의

③ 데이터 오픈마켓형(Marketplace)

- (개념) 오픈마켓을 통한 데이터 거래 시, ①오픈마켓 운영자와 데이터 제공자간, ②데이터 제공자와 이용하는 소비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등을 정하는 계약 유형

▲ (적용 사례) 국내에서 운영하는 주요 거래·과금 플랫폼들에 적용 가능. 이를 테면, 데이터스토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N클라우드플랫폼(네이버), OPEN API포털/빅데이터허브(SK텔레콤), 오디오피아(LGCNS), API스토어(KTH), BIGSIGHT(KT) 등이 있음

③-1. 오픈마켓운영자-데이터제공자 간 계약 유형(27개 조항)

- (주요 내용)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에 데이터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구매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터 이용자 간의 데이터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거래에서 중요한 핵심은 오픈마켓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데이터 거래의 가격 결정, 데이터 상품의 하자 등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임
- 본 표준 계약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오픈마켓운영자와 판매회원인 데이터 제공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함

< 오픈마켓운영자-데이터 제공자 간 조항(안) >

(제1조) 목적	(제10조) 서비스 이용료	(제18조) 면책
(제2조) 정의	(제11조) 데이터 상품의 전송, 배송	(제19조) 계약기간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12조) 청약철회 등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조) 계약의 해석	(제1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1조) 비용
(제5조)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4조) 판매대금의 정산	(제22조) 불가항력
(제6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5조) 정산의 유보	(제23조) 완전합의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6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4조) 일부 무효
(제8조) 데이터 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7조) 데이터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 양도금지
(제9조) 판매제한상품 및 금지 행위		(제26조) 준거법
		(제27조) 관할법원 등

③-2. 오픈마켓운영자-이용자 간(서비스용) 계약 유형(23개 조항)

- **(주요 내용)** 이용자형 표준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이 중개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소비자와 같은 데이터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오픈마켓은**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를 하고**, 또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 데이터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의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오픈마켓을 통해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일 경우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데이터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가분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 오픈마켓운영자-이용자 간 조항(안) >

(제1조) 목적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8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11조) 데이터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9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12조) 데이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20조)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계약서의 해석	(제13조)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제21조) 양도금지
(제5조) 이용신청 및 방법	(제14조) 데이터서비스 이용제한	(제22조) 준거법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제15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해지	(제23조) 관할법원 등
(제7조) 청약철회 등	(제16조) 오픈마켓운영자의 계약해지	
(제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7조)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9조) 오픈마켓운영자의 의무		

- “플랫폼형 계약”은 복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집약·보관·가공·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 차이가 있음
- ※ “데이터 플랫폼형”은 플랫폼별 목적, 관계자 범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계약 내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검토 사항만을 제시함
- ※ 정부 지원으로 ‘19년 10개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운영 중이며, 이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플랫폼형’ 계약의 대표 사례임

▲ (적용 사례)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 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수 비디오 카메라 사업자가 각기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상업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및 방재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함

- 플랫폼형 계약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①데이터 제공형, ②데이터 창출형, ③데이터 오픈마켓형 등 3종 표준계약서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다양한 관점(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활용,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공정거래 등)에서 계약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함

< 플랫폼 사업시 주요 고려사항(예시) >

구분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범위가 영리적, 상업적 목적에까지 미치는지, 가명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 검토 - 학술연구 목적에 영리적 목적, 산업적 목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범위 - 학술연구 목적의 유연한 해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② 비식별데이터 활용시	- 유통이 가능한 적절한 가명처리/비식별화 기준 마련 필요 - 빅데이터 플랫폼의 참여자 및 센터 보유 데이터의 가명처리/비식별화 및 결합 대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기준 마련
③ 저작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이전, 이용허락 계약 검토 - 데이터 관련 저작물 신탁제도(공공저작물, 뉴스저작물 등) 검토
④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 보호 조치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데이터의 관계
⑤ 플랫폼운영자 면책	- 제공된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침해 및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제3자 권리 등 침해 포함 데이터에 대한 운영자 면책 규정 마련
⑥ 참여자의 범위와 역할	- 플랫폼 참여자의 범위를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할지 여부 - 제공자 및 수요자 외 서비스 제공자 참여 여부 및 역할 정립
⑦ 공정거래	-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센터가 부당하게 데이터를 단독 또는 공동수집하는 경우 - 데이터셋(정보집합물)의 판매의 경우 - 플랫폼을 통한 거래 거절의 경우 -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사이에 구속조건부 거래의 경우

<부록> 표준계약서

- ①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 ②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 ③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①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함)은 ○○○에 관한 데이터의 취급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데이터거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000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제공데이터”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로서, 부속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 ② “파생데이터”란 을이 제공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통하여 새로 또는 2차적으로 생성한 데이터 등을 말한다.
- ③ “이용권한”이란 제공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④ “비밀정보”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공개하고 또 공개한 때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본 계약의 존재·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⑤ “가명처리”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가명정보”란 전항의 가명처리에 의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⑦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령으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공데이터의 제공방법)

갑은 본 계약기간 중 을에 대하여 제공데이터를 부속문서에 정한 제공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갑은 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공데이터의 이용허락)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제공데이터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본 계약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데이터에 대하여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하여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기타의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제공데이터를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제3자에 포함)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공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제공데이터 중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본 조의 이용허락은 갑의 제공데이터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⑥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본 조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조(파생데이터)

- ① 을은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에 대하여 ○○의 범위에서 [○○의 목적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무상[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② 을이 제공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단, 을은 갑에 대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유상]의 실시 허락을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 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을 얻을 때는, 을이 얻은 매출액의 ○%를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갑 및 을의 사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대금지급)

- ① 을은 갑에게 제공데이터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② 전항의 대가 계산은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월분으로 하고, 을의 제공데이터 이용가능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위 대가는 이용기간의 일할계산에 의한다.
- ③ 을은 위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제공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 ① 갑은 제공데이터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었음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 ②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제공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갑은 제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내지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④ 갑은 제공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 ⑤ 갑은 제공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관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제공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제공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용 등 하게 하는 경우, 을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을로부터 받았던 대가를 상한으로 한다.
- ⑧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조(가명정보, 민감정보의 처리)

- 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려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민감정보 내지 특정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제공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가명처리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공데이터 관리의무)

- ① 을은 제공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공데이터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 이상의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상대방의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④ 갑은 제공데이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을에게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데이터의 유출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데이터의 관리 방법·보관 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전 항의 보고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현황 보고 등)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을에 의한 제공데이터의 이용이 본 계약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용현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항에 따른 보고가 제공데이터 이용현황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일 전에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1년에 ○회를 한도로써, 을의 영업소에서 제공데이터의 이용 상황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그 이외의 을이 별도로 정하는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 의한 감사의 결과,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제공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감사에 소요된 비용 및 제공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추가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감사비용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제공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 ① 을은 제공데이터 유출,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등 본 계약에 위반하는 제공데이터의 이용(이하 [제공데이터 유출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공데이터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공데이터 유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데이터 유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원인 및 재발방지책을 검토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양 당사자는 자기의 본 계약의 위반에 기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함)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책임의 제한 등)

- ① 갑은 을이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에 관한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제공데이터 이용에 관련되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 클레임 또는 청구(이하 [분쟁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당 분쟁 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 등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한다.
- ③ 을은 전항에서 정하는 분쟁 등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 손실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한다)을 피해 받은 경우(단, 분쟁 등이 갑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 갑에 대하여 해당 손해 등을 전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서면·구두 또는 기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 공개한 비밀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명령 또는 관련 법령의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공개 시점에서 이미 공개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공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공개 시점에 알려진 정보
 4. 공개 후에 공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5.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된 정보
- ③ 공개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본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 또는 법률상 준수 의무가 있는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 ② 양 당사자는 전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00]일간의 기간을 정해 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타방 당사자가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최고 없이도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대금 지급의무를 ○○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③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제공데이터 중에서 부속문서에서 계약종료시에 폐기 또는 제거, 삭제 명기된 것에 관하여, 갑 및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제공데이터 등에 대하여 갑의 이용허락을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을이 계속 제공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범위 및 행위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④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울러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 ① 어떠한 당사자도 지진, 태풍, 수해, 화재, 노동쟁의,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에 실패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켰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합리적인 조치로 계약의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
-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에 대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선후책을 협의해야 한다.
- ④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손해배상 없이도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 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모든 합의를 망라하며, 본건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들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4조(관할법원 등)

-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갑 및 을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함)은 ○○○에 관한 데이터의 취급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데이터거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함)에 따라 ○○○○을 하는 것을 목적(이하 “이 건 목적”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 ② “대상데이터 등”이란 대상데이터 및 파생데이터를 말한다.
- ③ “이용 등”이란 이용, 사용, 가공 등, 개시, 양도(이용허락을 포함) 및 처분 등을 말한다.
- ④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⑤ “가공 등”이란 대상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파생데이터”란 대상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통하여 새로 또는 2차적으로 생성한 데이터 등을 말한다.
- ⑦ “매출금액”이란 파생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3자로부터 대가로써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데이터의 취득·수집 방법 등)

갑 및 을은 갑이 운영하는 ○○○○에서 을이 제공하는 ○○○○을 제공함으로써 대상데이터를 취득·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이용권한)

- ①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1에서 정한대로, 대상데이터의 이용권한은 가지는 것으로 한다.
-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해당 대상데이터를 이용 등 하는 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갑 및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이용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이용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① 파생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의 내용은 파생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2에서 정한대로 한다.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뒤 해당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 및 을은 전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이용 등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대상데이터에 관한 저작권(편집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은 갑 및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및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을 제외하고, 갑 및 을의 공유로 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파생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2에서 정한 대로 한다.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뒤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의 이용에 관해서, 상대방 당사자 및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저작권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은 해당 특허권 등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갑 및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등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의 공유(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대가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유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발명의 취득절차(‘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등 직무발명제도의 적절한 운용, 양도절차 등)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유 특허권 등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⑦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상호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어떤 권리도 양도, 이전, 이용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확인한다.

제7조(제3자에 제공 등)

- ① 갑 및 을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 등”이라 함)에는,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등의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 및 을은 제3자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사이에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제공 등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공 등 및 다시 제3자 제공 등을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 제공 시 제6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상호 동의한다.

제8조(대가·이익분배)

- ① 갑 및 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상데이터 등의 이용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양도비용,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갑 및 을은 제7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 제공 등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로서,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분배 이익액(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 및 을은 제7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 제공 등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계산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월(月)의 다음 월(月) ○일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달 ○일까지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에 관한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전항의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갑 및 을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시간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보증)

- ① 갑 및 을은 각각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이하 “상대방 데이터”라 함)의 정확성, 완전성·무결성(상대방 데이터에 하자 또

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안전성(상대방 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유효성(상대방 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 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려는 노력을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및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이용 등을 하게 한 경우
2. 자기가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데이터(이하 ‘상대방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해당 상대방 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알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용 등 하게 하는 경우

제10조(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① 이건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관하는 대상데이터 등을 자기가 보유하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적절한 관리 수단(보안 및 백업 등을 포함)에 의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건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 이상의 관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건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서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⑤ 이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다.)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 함)에 정한 개인정보 또는 비식별정보 등(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미리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갑 및 을은 별지3에 정한 구별에 따라서 대상데이터 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한다.
- ③ 갑 및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 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시의 대응 및 책임)

- ①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상실, 이용권한을 벗어난 이용, 가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라 함)을 발견한 경우, 또는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의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에 따라서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구명한 뒤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 갑 또는 을은, 해당 재발방지책을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하거나 누설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하기 곤란하고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그 금지에 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합의한다.
- ⑤ 갑 및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등(제14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으로서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등이 해당 위약금의 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이 실제 손해 등의 액을 입증하여 해당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를 엄격히 비밀로서 유지하고, 이것을 이 사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임원, 종업원 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

가에 대하여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만, 갑 및 을은 이들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 비밀정보의 개시를 받은 제3자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비밀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본 계약이 정한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이들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시,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시점에 이미 공지된 것
2.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후에 자기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것
3.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시점에서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
4.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후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제3자로부터 개시에 관한 제한 없이 개시된 것
5.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인지한 정보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및 을은 법령, 규칙 또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의한 규칙 혹은 규제 또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따른 비밀정보의 개시가 요청된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정보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에(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시 후 신속히 또는 즉시) 개시한 비밀정보의 내용을 서면에 따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비밀정보에 관한 문서, 전자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⑤ 본조에 기한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한 후 ○년간 존속한다.

제14조(손해배상)

갑 및 을은 자기의 본 계약의 위반에 기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함)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면책)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서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자연재해,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 정지 또는 긴급 관리(보수)유지, 법령의 제정개폐 기타 갑 및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따른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각각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대상데이터 등의 이용에 관련하거나 또는 대상데이터 등의 이용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손해 등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같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2.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을 한 경우
3.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4.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적 세금이나 과징금 등(公租公課)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산,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의 결의를 한 경우
6. 파산, 민사재생, 특별청산, 회사회생(更生)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또는 여기에 유사한 법적 도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다만 이들의 신청이 채권자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특별청산의 경우에는 절차개시명령을 한 경우)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최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폭력적인 요구행위
2. 법적인 책임을 초과한 부당한 요구행위
3.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4. 풍문이나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 ①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 본조 및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갑 및 을은 본 계약을 종료한 때는 대상데이터 등 중에서 별지4에서 계약종료 시에 폐기 또는 제거, 삭제가 명기된 것에 관하여, 별도 갑 및 을이 협의한 뒤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갑 및 을은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인수하여 이용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서 이용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의무·책임 또는 종료 전의 작위·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본 계약에 기하여 의무·책임을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 계약의 종료는 본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속하는 것이 본 계약에 있어서 의도되어지는 갑 및 을의 권리, 의무, 책임에는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울러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들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2조(관할법원 등)

-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갑 및 을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성신헌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별지1) 대상데이터

1. 대상데이터 및 그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이용권한	을의 이용권한
1	○○○	【기기 이름·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를 특정함에 속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방법으로 제공·공유하는 것인가】

(별지2)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이용권한	을의 이용권한
1	○○○	○○ 및 ○○ 【별지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저작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저작권】
2	○○○				

(별지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가공 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③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 오픈마켓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표준계약서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000(이하 ‘오픈마켓운영자’라고 한다)와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000’(www.000.co.kr)(이하 ‘사이버몰’라고 한다)에서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데이터상품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000(이하 ‘데이터제공자’라고 한다) 간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④ “데이터이용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구매회원으로 가입하여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⑤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5조(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서비스 : 판매 관련 지원 서비스,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 서비스, 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2.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 오픈마켓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 ①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로서 데이터제공자가 채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마켓운영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 ②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제공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관련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가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약(신청)을 하고 오픈마켓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오픈마켓운영자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정한 회원 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원칙적으로 데이터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여야 하나,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0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오픈마켓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오픈마켓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오픈마켓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7. 그 외 본 계약에 위배되거나 위법 내지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직접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상품 등록 후 고시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오픈마켓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사이버몰에 게재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오픈마켓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데이터이용자가 본 조 및 오픈마켓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 대해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아이디(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판매제한 상품 및 금지행위)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판매제한 상품의 등록·판매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제한 상품을 등록·판매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한다.

1.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2.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품
 3. 그 외 오픈마켓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상품등록을 하는 행위
 2.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사이버몰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외 오픈마켓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10조(서비스 이용료)

- ① 서비스이용료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데이터제공자가 이용하는 것에 따른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오픈마켓운영자는 판매대금 정산 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 ② 서비스이용료는 플랫폼서비스이용료(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이용료율을 곱한 것)와 판매촉진서비스이용료(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 ③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며, 오픈마켓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 또는 오픈마켓운영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가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제공자는 주문정보에 따라 전송 또는 배송을 하여야 한다.
-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발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데이터상품을 DVD 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청약철회 등)

① 데이터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고 한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③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④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 데이터이용자는 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데이터를 구매한 데이터이용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도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금을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상품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상품대금 환급금 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대금의 정산)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제10조의 서비스 이용료, 오픈마켓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기타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0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금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 청약철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대금의 환급금은 판매예치금으로부터 우선 충당된다.

제15조(정산의 유보)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상품의 허위등록,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00일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상품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한 후 상품판매대금의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로부터의 환불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 ③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해당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의 보호)

-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기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오픈마켓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오픈마켓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오픈마켓운영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오픈마켓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한 일반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데이터제공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 ② 양 당사자는 전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00]일간의 기간을 정해 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타방 당사자가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최고 없이도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오픈마켓운영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 5. 타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 ③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울러 양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불가항력)

- ① 어떠한 당사자도 지진, 태풍, 수해, 화재, 노동쟁의,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에 실패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켰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합리적인 조치로 계약의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에 대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선후책을 협의해야 한다.

④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손해배상 없이도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양 당사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23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모든 합의를 망라하며, 본건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중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들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7조(관할법원 등)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오픈마켓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표준계약서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000(이하 ‘오픈마켓운영자’라고 한다)와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000’(www.000.co.kr)(이하 ‘사이버몰’라고 한다)에서 구매회원으로 가입하여 데이터상품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자나 소비자 000(이하 “데이터이용자”라 한다)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④ “데이터이용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구매회원으로 가입하여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⑤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 ① 데이터이용자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사이버몰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오픈마켓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이용자는 사이버몰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오픈마켓운영자는 사이버몰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픈마켓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본 계약은 데이터이용자가 오픈마켓운영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오픈마켓운영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오픈마켓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

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오픈마켓운영자에게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사이버몰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청약철회 등)

①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사이버몰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인 데이터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2.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 ②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가분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 ④ 데이터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데이터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서비스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 ② 제1항에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③ 데이터제공자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오픈마켓운영자의 의무)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오픈마켓운영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 데이터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오픈마켓운영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데이터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오픈마켓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⑥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데이터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사이버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오픈마켓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이용자는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오픈마켓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서비스 제공 및 변경)

-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오픈마켓운영자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2. 오픈마켓운영자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오픈마켓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데이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오픈마켓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데이터서비스의 중단)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데이터서비스 이용제한)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로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오픈마켓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운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오픈마켓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데이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② 오픈마켓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오픈마켓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17조(데이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오픈마켓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오픈마켓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3조(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오픈마켓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오픈마켓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오픈마켓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오픈마켓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오픈마켓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오픈마켓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오픈마켓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오픈마켓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오픈마켓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0조(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오픈마켓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서비스 접속화면, 사이버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오픈마켓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0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오픈마켓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오픈마켓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1조(양도금지)

오픈마켓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3조(관할법원 등)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